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학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종류)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으로 한다.

제3조 (적용배제) 이 규정은 별도의 지급요건을 정하고 있는 각종 장학단체 및 개인 기부 장학금의 지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수혜자격)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은 재학중 매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이 2.5(75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3항, 4항, 5항, 10항은 70점 (2.0) 이상자로 한다.

1. 입학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학생활동 및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4.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 조달이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5.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혜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
6. 직계존비속 2인 이상 재학자 중 1인.
7. 교직원 직계자녀.
8. 교육자 자녀.
9. 교역자 자녀.
10. 학생연구원.
11.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초의학을 지원하는 자
12. 기타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의과대학장이 수혜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5조 (장학위원회)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년 9월 5일]

제 2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내역

제6조 (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장학금
 - 가. 전체 수석 장학금
 - 입학금, 수업료에 해당하는 금액지급(전 학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입학당시 소정의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재학 중 매 학기 성적이 평균평점이 3.50이상인 자에게 계속 지급하며, 최초 합격자에 한한다) [개정 2020.1.21]
 - 나. 삭제 [개정 2020.1.21]
 - 다. 성적 우수 장학금
 - 수업료,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2. 일반 장학금
 - 가. 성적우수 장학금(각 학과 학년별 해당학기 성적우수자)
 - 기준은 별도로 둔다.
 - 나. 봉사 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다.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수혜 대상자)
 -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라. 직계존비속 2인 이상 재학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단, 1인에게만 적용)한다.
 - 마.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수업료,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바. 삭제 [개정 2020.1.21]
 - 사. 교역자자녀 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 아. 학생 연구원 장학금

- 기초의학교실, 임상의로학교실, 교목실의 연구 및 교육관련활동에 지원하는 학생으로 하며, 해당 교실의 주임교수 혹은 교목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2010.09.01][개정2012.01.20]

자. 생활보호장학금

-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각 학년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차. 선교 장학금

- 기준은 별도로 둔다.

카. 복음병원장 장학금

-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타. 기초의학 장학금

- 기준은 별도로 둔다.

파. 고신인재 장학금

- 의과대학이 정하는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의과대학장 결재로 지급한다.[개정 2020.1.21]

하. 기타

제7조 (교외장학금)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체, 교회 및 개인이 지급하는 다음 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의과대학장 결재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1]

1. 삭제 [개정 2020.1.21]
2. 삭제 [개정 2020.1.21]
3. 삭제 [개정 2020.1.21]
4. 삭제 [개정 2020.1.21]
5. 삭제 [개정 2020.1.21]
6. 삭제 [개정 2020.1.21]

제 3 장 장학금의 지급 및 업무관리

제8조 (사무관장) 장학금의 지급 및 업무관리는 교학과에서 담당하고, 그 기금의 관리는 서무과에서 관장한다.

제9조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장학금신청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징계처벌이 해제된 자.
2.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신청자격을 제한한 자.

제12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및 취소)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한다.

1. 징계처벌을 받은 자.
2. 학생경건회 규정에 의한 경건회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개정 2010.09.01]
3. 휴학 또는 제적된 자.
4. 고신대학교 학칙에 관한 내규 제13조 각 항에 해당한 자.
5. 기타 장학금 지급 취지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 (이중 지급중지) ① 교내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 수혜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09.01., 2020.1.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1. 생활보호장학금, 에벤에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2. 봉사장학금, 학생연구원장학금, 고신인재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제14조 (수혜대상자의 교체) 장학금의 수혜대상자가 본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해당되어 수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 순위자로 교체할 수 있다.

제15조 (장학생의 자격상실)

1.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2. 선정된 장학생이 당해 학기에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하거나 수업일수 1/4 이상 무단으로 장기결석을 할 경우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전액 환입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198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198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